## 국민의 배우자(F-5-2)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

## ■ 대상

- 한국인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(법률혼)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로서, 국민의 배우자(F-6-1)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
- 품행단정, 생계유지능력, 기본소양 요건을 충족 (하단'■요건'항목 참고)

### ■ 유건

#### ① 품행단정 요건

- □ 세부 기준 : '품행단정 요건 참고사항' 페이지 참고
- □ 요건 완화·면제
  - 신청인이 아래 ①~③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, 청장 등은 1/2 범위 내에서 제한기간 완화
    - ① (국내에 형성된 사회적·경제적 기반) 5년 이상 국내체류
    - ② (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) 최근 3년간 매년 30만 원 이상을 공익사업에 기부하거나, 매년 20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 참여
      - \*\* "1365 기부포털(www.nanumkorea.go.kr)"을 통해 공익사업유형 및 기관을 확인할 수 있으며, "1365 자원봉사포털(www.1365.go.kr)"을 통해 자원봉사활동 실적 발급 가능
    - ③ (공익침해 정도) 초범이고 중한 범죄가 아닐 것

#### ② 생계유지능력 요건

- □ 세부 기준
- O 소득금액 또는 가계자산 기준
  - <u>신청인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\*</u>의 소득이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 (GNI) 이상이거나
  - 신청인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자산 합계가 중위수준 이상일 것
    - \* "생계를 같이하는 가족": 신청인의 배우자, 신청인의 직계가족, 배우자의 직계가족
    - \* 원칙적으로 1년 이상 신청인과 계속 동거하며 등록된 주소지(체류지)와 실 거주지가 같은 경우 인정. 불가피한 사유(예: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직장을 다니는 사유)로 주소지가 다른 경우 내방상담 바랍니다.

### [※소득금액 기준 참고사항]

\*인정 소득 범위: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①근로소득 + ②사업소득(농림수산업소득 포함) + ③부동산 임대소득 + ④이자소득 + ⑤배당소득 + ⑥연금소득의 합계

### \*인정 소득 기간 : 과거 1년

- 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는 시기 이후 신청하는 사람 → 전년도 소득
- □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는 시기 이전 신청하는 사람 → 전전년도 소득. 다만,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 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입금내역을 함께 제출하면 전년도 소득 인정
- □신청일에 근접한 시기에 소득이 발생한 사람(예: 신규 사업자·취업자) 등 전년도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으로는 생계유지능력 요건을 인정받을 수 없으나, 객관적 증빙서류(예 급여입금내역, 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한 금액 등 소득입증 서류 일체)를 통해 최근 12개월 소득이 확인되는 사람 →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소득
- \*인정 소득 기준: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(GNI). 다만,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(GNI)이 발표되지 않을 때까지는 전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(GNI) 적용

#### [※가계자산 기준 참고사항]

\*중위수준 :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보유 중인 순자산(부채 제외)의 합계가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전년도 "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"의 순자산 "중앙값" 이상 ※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의 "시도별 부채 및 순자산 규모"의 전국 중앙값

- \*자산: 취득일로부터 영주자격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과 실물자산 마금융자산: 적립·예치식 저축(현금, 자유입출금 저축, 예·적금, 펀드, 보험, 주식, 채권 등)과 전·월세보증금
  - 펀드, 보험, 주식, 채권 등은 납입금액 또는 투자금액이 아닌 신청 시 (예상)환급가액을 자산으로 인정
  - 전·월세보증금은 입출금거래내역을 통해 임대인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 필요
  - ▫실물자산 : 거주주택 등 부동산, 공시가격뿐만 아니라 시중은행 공표 시세도 인정
  - ▫금융자산과 실물자산 모두 허가될 때까지 그 가치가 유지되어야 함

\*부채 :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신용정보조회서에 기재된 부채

#### □ 요건 완화・면제

- 신청인이 아래 ①~④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. 청장 등은 20% 범위 내에서 기준금액 완화
  - ※ "기준금액"은 일인당 국민총소득(GNI) 금액과 중위수준의 가계자산 금액을 뜻하며, "20% 범위 내 완화"는 기준금액에서 20%까지 경감하는 것을 뜻함(이하 동일)
  - ① 한국인 배우자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(한국인 배우자가 임신한 경우도 인정)
  - ② 한국인 배우자의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 1년 이상 정기적으로 불임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(한국인 배우자가 치료받는 경우도 인정)
  - ③ 한국인 배우자의 직계가족(국민)을 1년 이상 부양·동거하고 있는 사람
  - ④ 그 밖에 생계유지능력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청장 등이 인정하는 사람

O 신청인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, 청장 등은 아래 완화 기준을 적용하여 50% 범위 내에서 기준 금액 완화

#### << 자녀양육자에 대한 생계유지능력 요건완화 기준 >>

구분	국내 체류 기간					
	2년 ~ 5년	6년 ~ 9년	10년 이상			
 자녀 1명	기준금액의 20% 경감	기준금액의 30% 경감	기준금액의 40% 경감			
자녀 2명	기준금액의 30% 경감	기준금액의 40% 경감	기준금액의 50% 경감			

O 신청인, 한국인 배우자, 양육하고 있는 자녀 중 "중증질환" 또는 "중증장애"가 있고, 신청인이 5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였다면 청장 등은 생계유지능력 요건 직권 면제 가능

#### < 중증질환자 및 중증장애인 범위 >

- 중증질환자 :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(보건복지부고시)」[별표 3]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및 [별표 4의2]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하여 동 고시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산정특례 등록 (재등록)을 신청·적용받고 있는 사람
  - ※ 표준화된 증명서식은 없으며 진료비 영수증 우측 상단에 "중증질환(중증난치질환)" 또는 "산정특례"기재
- 중증장애인 :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[별지 제9호 서식] 장애인증명서\*의 "종합 장애 정도"란에 "중증장애" 또는 "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"로 기재된 중증장애인 \* 등록장애인의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 명의로 증명서 발급 기능

### ③ 기본소양 요건

- □ 세부 기준
- O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였거나, 영주용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 점수 60점(100점 만점) 이상
- □ 요건 완화·면제
- 신청인이 아래 ①~⑥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(4단계)를 합격하면, 청장 등은 신청인이 기본소양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가능
  - ① 한국인 배우자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(한국인 배우자가 임신한 경우도 인정)
  - ② 한국인 배우자의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 1년 이상 정기적으로 불임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(한국인 배우자가 치료받는 경우도 인정)
  - ③ 한국인 배우자의 직계가족(국민)을 1년 이상 부양·동거하고 있는 사람
  - ④ 만 60세 이상인 사람
  - ⑤ 10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
  - ⑥ 그 밖에 기본소양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청장 등이 인정하는 사람
- O 신청인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, 청장 등은 아래 완화 기준을 적용
  - 중간평가(4단계)를 합격하거나, 사전평가 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기본소양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가능

#### << 자녀양육자에 대한 기본소양 요건완화 기준 >>

구분	국내 체류 기간					
	2년 ~ 5년	6년 ~ 9년	10년 이상			
 자녀 1명	중간평가(4단계) 합격	중간평가(4단계) 합격	사전평가 60점			
자녀 2명	중간평가(4단계) 합격	사전평가 60점	사전평가 50점			

- ※ 사전평가 결과 5단계로 배정받은 사람은 중간평가(4단계)를 합격한 것으로 인정(이하 동일)
- O 신청인, 한국인 배우자, 양육하고 있는 자녀 중 "중증질환" 또는 "중증장애"가 있고 신청인이 5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였다면, 청장 등은 기본소양 요건 직권 면제 가능

#### < 중증질환자 및 중증장애인 범위 >

- 중증질환자 :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(보건복지부고시)」[별표 3]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및 [별표 4의2]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하여 동 고시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산정특례 등록(재등록)을 신청·적용받고 있는 사람
  - ※ 표준화된 증명서식은 없으며 진료비 영수증 우측 상단에 "중증질환(중증난치질환)" 또는 "산정특례"기재
- 중증장애인 :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[별지 제9호 서식] 장애인증명서\*의 "종합 장애 정도"란에 "중증장애" 또는 "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"로 기재된 중증장애인 ★등록장애인의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 명의로 증명서 발급 기능

## ■ 안내사항

- 대상 및 제출서류 검토 후 허가 여부가 결정되며, 심사 중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영주자격 신청 당시 기존 체류자격의 잔여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체류기간 연장 후 영주자격 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외국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·외국인 관서로 방문하여 신청해주시고, 사전 방문예약제도를 시행하는 관서인 경우 온라인 예약 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.
  - \* 방문예약 사이트(PC, 모바일): 하이코리아(www.hikorea.go.kr)
- 상세문의: 외국인종합안내센터 (국번없이 1345)

### ■ 구비서류

#### [기본서류]

- ① 통합신청서(별지 34호), 여권 원본 및 사본, 외국인등록증(체류자격 F-6), 표준규격 사진1매수수료(자격변경 20만원 + 영주증 3만원)
- ② 체류지 입증서류 (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대체 가능)

### [가족관계 확인서류]

- ③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(상세),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,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주민등록등본 각 1부
- ④ (자녀가 있을 경우)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
#### [정상적인 혼인생활 유지 확인 서류]

- ⑤ 가족행사(친인척 혼인, 입학, 졸업 등), 명절, 여행, 일상생활 등 그간 부부가 혼인생활 중함께 찍은 사진(3장 이상)
- ⑥ 필요시 부부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, 주변인(가족, 직장동료, 이웃 등) 확인서, 그 밖에 혼인생활확인 서류 등

#### [품행단정 요건 서류]

- ⑦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원본 (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, 공적확인 및 번역 필요)
  - \* 번역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하고 신분증 사본 첨부하시기 바랍니다.
  - \* 세부 내용은 '[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참고사항]' 페이지를 확인 바랍니다.

#### [생계유지능력 요건 서류]

- ⑧-1 (일인당 국민총소득 이상의 소득금액)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금액증명 (필요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급여입금내역, 그 밖의 매출·비용 등 소득입증 서류 일체도 함께 제출)
- ®-2 (중위수준 이상의 가계 자산)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모두의 자산 증빙서류 (입출금거래내역, 예·적금증명, 전·월세계약서,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 등) 및 신용정보조회서 (한국신용정보원 발급)

#### [기본소양 요건 서류]

- 9-1 (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)
- "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"(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또는 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)
- ⑨-2 (종합평가 60점 이상)
  - "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"(KIPRAT) 또는 "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"(KINAT)
- ⑨-3 (요건 완화 대상자)
  - "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시험 합격증"(KLCT) 또는
  - "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성적증명서"

### [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청장 등이 인정한 서류]

O 생계유지능력, 기본소양 요건 완화/면제 대상인 경우 이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서류 등

## [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참고사항]

#### 1. 발급기관 및 내용

- 영주자격 신청자의 국적국(제3국)에 ①소재하는 ②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문서로서, 국적국(제3국) 내에서 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
  - ① 국적국(제3국)에 소재하지 않는 주한 공관(주한 러시아대사관 제외)이 발급한 범죄경력인정서는 불인정함
  - ② 본국 내 범죄경력 확인하는 별도 기관·시스템이 미흡할 경우, 거주지를 관할하는 소관기관 등의 증명서로 대체 가능
    - (중국) 발급기관·양식·명칭 등이 통일되어 있지 아니한 점 고려, "범죄경력 증명에 상응하는 모든 문서 (파출소 발급본 포함)" 인정
    - (미국) FBI본부의 범죄경력증명서(본인이 직접 발급 받거나 FBI에서 공인한 채널러를 통하여 발급 받음) 를 제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주정부에서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도 미국 전역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발급된 경우 인정

#### 2. 인증절차

-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여부에 따라 인증절차가 다름
  - ①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 :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국가의 아포스티유 확인
    - ※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국민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'아포스티유 확인서'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범죄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을 예외적으로 허용
  - ②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가 :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국가 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
    - \* 다만, 중국의 경우 "중국 공증처 공증과 외교부 인증"을 거쳐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함
-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하나 대한민국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 영사 확인 생략 가능

#### 3. 제출 범위 및 유효기간

○ 제출 범위 : 국적국 및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한 제3국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

○ 유효 기간 : 영주자격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

#### 4. 기타 사항

- 영주자격 신청 시 범죄경력증명서 원본과 공증된 번역본\* 제출 원칙
  - \* 번역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하고 신분증 사본 첨부

#### 5. 제출 면제 대상

- 만 14세 미만인 사람
- 대한민국 출생 또는 만 14세 미만에 입국하여 만 14세 이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
- 사증 발급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사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국내에서 영주(F-5)자격변경을 신청하는 사람
- 범죄경력증명서 발급대상 국가기준에 따라 발급 제한 연령이거나, 발급을 위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발급이 어려운 사람 (단, 신청인이 해당 국가의 발급기준 제출 등 발급이 어려운 사실을 소명하여야함) ※ (예시) 만 18세 미만 캐나다인 등

- 천재지변, 전쟁 등으로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\*이 있다고 재외공관의 장 또는 출입국·외국인청장·사무소장·출장소장이 인정하는 사람 (단, 신청인이 발급이 어려운 사실을 소명하여 야 함)
- 과거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 하지 않은 사람
- 신청일까지 국내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합법 체류한 사람
  - ※ 신청인의 국적 국가가 발행한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1년이 상 거주한 제3국이 발행한 해외범죄경력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함
  - ※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한 사람은 해외 체류기간 동안의 체류국 정부가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 징구하나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제한 연령이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발급이 어려운 사람은 그 사실을 소명하면 생략가능
- 다음 어느 하나로 영주자격(F-5)을 신청하는 사람
  - ▶ 고액 투자자(F-5-5), 첨단분야 박사(F-5-9), 일반분야 박사(F-5-15)
  - ▶ 특정분야 능력소유자(F-5-11), 특별공로자(F-5-12)

## ['품행단정 요건' 참고사항]

#### [품행단정 요건]

■ 심사 기준 :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일 경우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함

#### 1) 국내범죄 심사기준

- 가) 「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 제 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
- 나)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
- 다)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 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
- 라)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벌금을 납부한 날\*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(※ 추징금 등 납부 의무자도 동일하게 처리)
  - \* 미납으로 노역장 유치 등의 경우 유치 종료일 등을 납부한 날로 함
- 마)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거나, 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- 바) 신청일부터 최근 5년간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.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.
- 사)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출입국관리 법 제68조에 따른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
- 아) 최근 3년간 「출입국관리법」을 위반하여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을 받았거나, 합산한 범칙금 금액이 700만원 이상인 사람
- 자) 국내법을 위반하여 「출입국관리법」 제46조 제1항의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되나, 인도적인 사유 등이 고려되어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, 해당 체류허가 결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
#### 2) 해외범죄 심사기준

- 가) 외국에서「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서 규정한 "특정 강력범죄"및 협박, 공갈, 사기, 3회 이상 음주운전, 보이스피싱, 마약범죄로 외국에서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
- 나) 그 외의 범죄로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준하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(선고일로부터 10년 간 품행단정 미충 족으로 허가제한)

#### ■ 품행단정 요건 적용에 대한 예외적 사유

- 영주자격을 신청한 외국인이 품행단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주자격 취득을 허가할 수 있다. 단, 이 경우 품행단정 요건을 제외한 생계유지 및 기본소양 요건은 충족하여야 하며, 법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함.
- 1) 국내에서 형성한 사회적 · 경제적 기반
- 2)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
- 3) 대한민국 법률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공익 침해 정도
- 4) 그 밖의 사정

# 거주/숙소제공 확인서 (Confirmation of Residence/Accommodation)

1. 거주/숙소를 제	공 받는 외국인 ( Foreign Tenant / Recipient )					
국 적 (Nationality)	외국인등록(거소)번호 (Foreign Resident/Domestic Residence Registration No.)					
성 명 (Full Name)	전화번호 (Telephone No.) 휴대전화 (Cell phone No.)					
주 소 (Address)						
2. 거주/숙소 제공지	ł ( Landlord / Provider )					
국 적 (Nationality)	주민/외국인등록번호 (Resident/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.)					
성 명 (Full Name)						
외국인과의 관계 (Relationship)	[ ] 친 척    고용주					
소유형태 (Ownership Type)	지 가 임대 기타 [] (Own) (Rent) (Other)					
주거형태 (Residence Type)	개인주택 등 기 숙 사 [ ] (Private Residence, etc.) (Dormitory) 숙박시설 기 타 [ ] (Accommodation) (Other)					
거주/숙소 제공일 (Starting Date)	년(Year) 월(Month) 일(Date)					
위와 같이 거주/숙소를 제공하였음을 확인합니다. (I, the undersigned, confirm the provision of accommodation to the abovementioned foreigner.)						
	년(Year) 월(Month) 일(Date)					
	성 명 (Name) : (서명) (Signature) 업체명(Company Name) : (직인) (Official Seal) 출입국·외국인청(사무소)장 귀하					
1. <b>외국인을 고용한 업체에서 기숙사 등을 제공하는 경우 작성방법</b> o 제공자란에는 고용주, 대표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인적사항 기재 o 확인란에는 대표자 성명과 서명 날인 또는 업체명과 직인 날인 중 택일						
2. 숙소제공자가 외국인에게 함께 제공해야 하는 서류 (Documents to be provided to the foreign tenant from the accommodation provider)  o (숙소제공자와 주소가 같은 경우) 숙소제공자 신분증 사본 (In the case of living on the same address with the accommodation provider: Copy of accommodation provider ID Card)  - 다만, 신분증 사본에 숙소제공자의 인적사항·최신 주소가 나타나 있어야 함 (Note: a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most recent address of accommodation provider must be indicated on his ID Card.)  o (숙소제공자와 주소가 다른 경우) 숙소제공자의 소유 또는 임차 물건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(등기부등본,						
임대차계약서 등) (In the case of living on the different address to the accommodation provider : Documents of evidence regarding ownership of the provided property: Certified Copy of Register, Residential						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²(재활용품)

수입으시는 뒷만에 첨부(Revenue Stamp on the Backside) / 수수료 면제(exemption) [ ] (면제시유

## 통합신청서 (신고서) APPLICATION FORM (REPORT FORM)

※ 신청서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 (Please complete this form in Korean or English.)

□ 신청/신고 선	선택 SELECT	APPLI	ICATION/RI	EPORT							
[ ] 외국인 등록 FOREIGN RES	IDENT REGISTRAT	ENGAGI	[ ]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(희망 자격 : )  ENGAGE IN ACTIVITIES NOT COVERED BY THE STATUS OF SOJOURN / Status to apply for ( )					PHOTO			
[ ] 등록증 재발급		A D D	[ ] 근무처 '		가 / 신고		) ACE			여권용 사진(35mm×45mm)	
REISSUANCE OF REGISTRATION CARD  [ ] 체류기간 연장허가			[] 재입국하	- ON ADDII  가 (단수, 톡 Y PERMIT (	<del>부</del> 수)					* 촬영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함	
	F SOJOURN PERIO	)	1		SINGLE, W	OLIIIL	LL/			taken within last 6 months	
[ ] 체류자격 변경허가 (희망자격: ) CHANGE OF STATUS OF SOJOURN / Status to apply for ( )		,	[ ] 체류지 변경신고 ALTERATION OF RESIDENCE					* 외국인 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시에만 사진 부착 Photo only for Foreign			
[]체류자격 부여	(희망 지격 :	)	[ ] 등록사항 변경신고					Resident Registration (Reissued)			
GRANTING STATUS OF SOJOURN / Status to apply for ( )		RN	CHANGE OF INFORMATION ON REGISTRATION								
성명 Name In Full	성	Surnam	e 명 Given names								
생년월일 Date of Birth	년 y	уууу	월 mm	일 dd	성 빌 Sex	#	[]남 M []여 F			국적	
외국인등 Foreign Resident I	록번호 Registration No.									Nationality	
여권번호 Passport No.	여		여권 ! Passport	발급일자 여 Passp			여권 유효기간 ssport Expiry Date				
대한민국 내 주소 Address In Korea											
전화번호 Telephone No.				휴대전화 Cell phone No.							
본국 주소 Address In Home Country							전화번호 Phone No.				
	미취학[], Non-school[], Be	최 mentary[	], 중[], ], Middle[], Hi	고[ ] gh[ ] N	학교 이- ame of S					전화번호 Phone No.	
School Status	학교 종류 Type of School Accredited school by Education Office[], Non-accredited, Alternative school[]					학교[] chool[]					
원 근무처 Current Workplace				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o.		lo.				전화번호 Phone No.	
Workplace	Workplace 예정 근무처 New Workplace		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o.		lo.			ı	전화번호 Phone No.		
연 소득금액 Annual Income Amount			만원(ten thousand won)			직업	업 Occupation				
재입국 신청 기간 Intended Period Of Reentry		-			면 E-Mail						
반환용 계좌번호(외국인등록 및 외국인등 Refund Bank Account No. only for F		기국인능· / for Fo									
신청일 Date of application			신	청인 서명	또는	인 Signat	ture/Sea	al			
신청인 (담당공무 Required docume (Matters to be check	제출서류 원 확인사항) ents for applican ed by officer in chan		「출입국관리법 시 Please refer t in Annex 5-2	o the attacl	hed docun	nents	for each	status	of s	tay and each	application type
	행정정보 공	동이용	동의서 (Cons	sent for sh	naring of	admi	nistrat	ive in	form	ation)	
본인은 이 건 업무처 것에 동의합니다. I, the undersigned public servant in related documents	*동의하지 않는 hereby consent to charge as specifie	경우에는 allow a	· 신청인이 직접 II documents an	관련 서류를 d information	제출해야 협 n required	합니다. for the	e processi	ing of t	his a	application to	be viewed by the
신청인 Applicant		또는 인 ure/Seal	신청인의 배우 Spouse of applica			l명 또는 gnature	를 인 신: /Seal Fath	청인의 = er/Mother			서명 또는 인 Signature/Seal
공 용 란 (For Official Use Only)											
기본 사항	최초입국일			체류지	ŀ격				체	류기간	
접수 사항	접수일자			접수반	호						
허가(신고) 사항	허가(신고) 일자	_		허가반	년호 					류자격 류기간	
73 TII	담 당									·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	소장
결 재									7	L / 브	